
부록

1. 2019년 중 주요 일지	77
2.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79
3. 통계	80
4. 용어해설	85

1. 2019년 중 주요 일지

시 기	조 치 내 용
2019. 1. 24.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간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의 기본 개념과 구현방식,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이슈를 정리
2. 26.	금융위원회,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 •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전반의 개편을 추진
3. 26.	한국은행,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 2018년 중 지급결제제도 감사·정책대응,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와 향후 정책방향을 기술
5. 10.	한국은행, 「2018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표 • 지급결제 정책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5. 3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 발표 • 담보자산 관리제도 개선, 중앙청산소(CCP)의 청산대상 확대, 거래정보저장소 가동 준비 등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
8. 1.	한국은행,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 차액결제 참가은행이 제공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기존 순이체한도의 50%에서 70%로 인상하는 한편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도 확대
8. 27.	금융결제원, 제2금융권의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와,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일괄 해지·잔액이전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확대 실시
9. 4.	한국은행, 「2018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발간 •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도 IT운영 현황,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현황 등 금융정보화 관련 통계자료를 수록
9. 4.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회사가 핀테크업체에 폭넓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
9. 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 주식·사채 등을 전자방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회사·증권 사무의 편의성 제고, 증권 발행비용 및 유통위험 감소, 법률관계·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혁신 도모 등을 기대
10. 29.	한국은행, 「2019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 ‘지급결제의 미래를 보는 두 가지 관점: 개방과 조화’라는 주제로, 핀테크 혁신 가속화 및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

시 기	조 치 내 용
10. 30.	<p>한국은행, 「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워킹그룹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내용, 평가 및 향후 대응계획을 수록하여 발표한 보고서(「Investigating the impact of global Stablecoins」)의 주요 내용을 국내에 소개
11. 7.	<p>한국은행,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고, 국내 지급결제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12. 18.	<p>한국은행, 「2019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원장기술 생태계와 전자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내외 금융 부문에서 분산원장기술 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규제 변화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향후 분산원장 기술 확산 및 관련 생태계 발전이 전자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교환
12. 18.	<p>금융결제원, 핀테크업체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 구축·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은 자금이체 및 조회기능을 표준화된 방식(Open API)으로 제공하고, 은행 및 핀테크업체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 가능
12. 20.	<p>한국은행,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결제시장의 혁신과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영국의 동향 및 특징을 정리
12. 26.	<p>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은행계좌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에 앱 형태의 현금카드를 탑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점 등에서 대금지급, ATM 거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

2.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제336조에서 준용)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시스템명	운영규칙	효력발생일시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규정, 동 세칙 및 동 절차	2006.8.21. 09:30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2006.8.21. 07:00
	타행환공동망	타행환업무공동망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2006.8.21. 09:30
	CD/ATM공동망	CD/ATM공동망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2006.8.21. 07:00
	어음교환시스템	어음교환업무규약,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규약, 전자어음업무규약, 내국신용장판매대금추심의뢰서교환규약 ¹⁾ , 기업구매자금융 정보교환규약 및 각 규약의 시행세칙, 재해·경영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특별규약	2014.1.10. 00:00
	지로시스템	지로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이용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CLS 은행	CLS시스템	CLS Bank International Rules Settlement Member Agreement	2006.8.21. 09:30

주: 1) 내국신용장어음의 경우에는 원화 및 미 달러화 표시에 한함

b.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제336조에서 준용)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

3. 통계

가.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건수

(일평균, 천건, %)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한은금융망	15.3	16.5	18.0	19.9	11.0
소액결제시스템	20,659	21,301	22,812	24,554	7.6
어음교환시스템	524	421	329	252	-23.3
지로시스템	5,060	4,675	4,437	4,301	-3.1
금융공동망	15,075	16,206	18,046	20,001	10.8
(전자금융공동망)	9,164	10,289	12,178	14,236	16.9
(타행환공동망)	354	333	319	295	-7.6
(CD공동망)	1,883	1,796	1,700	1,548	-8.9
(CMS공동망)	3,563	3,691	3,764	3,839	2.0
(지방은행공동망)	0.4	0.5	0.5	0.5	-7.9
(전자상거래공동망)	111	95	84	81	-3.1
(직불카드공동망)	0.4	0.3	0.1	0.1	-27.2

나.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금액

(일평균, 십억원, %)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한은금융망	299,780	323,048	340,716	369,920	8.6
소액결제시스템	61,858	62,375	66,950	69,446	3.7
어음교환시스템	9,075	8,220	8,002	7,661	-4.3
지로시스템	991	1,009	1,024	1,030	0.7
금융공동망	51,792	53,146	57,925	60,755	4.9
(전자금융공동망)	45,621	46,933	51,793	54,823	5.8
(타행환공동망)	4,794	4,822	4,793	4,679	-2.4
(CD공동망)	932	923	892	818	-8.3
(CMS공동망)	423	443	421	414	-1.7
(지방은행공동망)	8.2	10.4	10.6	8.3	-21.9
(전자상거래공동망)	15	15	14	13	-6.7
(직불카드공동망)	0.0	0.0	0.0	0.0	-39.3

다.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규모

(일평균, 건, 십억원, %)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건수	참가기관 간	14,297	15,449	16,890	18,811	11.4
	콜자금	715	680	564	468	-17.1
	(콜거래시스템)	714	680	564	467	-17.1
	(일반자금이체시스템)	1	0	0	0	-18.0
	증권자금	9,598	10,709	12,143	13,967	15.0
	(DvP시스템)	8,477	9,539	10,970	12,804	16.7
	(일반자금이체시스템)	1,121	1,170	1,173	1,163	-0.9
	외환자금	797	743	689	594	-13.8
	(CLS시스템)	34	36	42	40	-5.3
	(일반자금이체시스템)	763	707	647	554	-14.3
	고객자금	1,856	2,150	2,398	2,668	11.3
	(수취인지정자금이체시스템)	735	806	870	887	2.0
	(일반자금이체시스템)	553	676	705	787	11.6
	(연계결제시스템)	568	667	822	993	20.8
	차액자금	247	245	244	241	-1.2
	기타	1,084	922	852	874	2.5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1,051	1,072	1,072	1,128	5.2
국고금수급 ¹⁾	982	1,002	1,002	1,058	5.6	
한국은행대출	26	24	24	23	-2.9	
국공채거래 ²⁾	43	45	46	47	1.7	
원화자금 합계	15,347	16,521	17,962	19,939	11.0	
외화자금 합계 ³⁾	6.0	7.4	7.3	7.2	-2.2	
금액	참가기관 간	285,231	307,712	324,805	353,856	8.9
	콜자금	27,689	27,234	23,531	21,070	-10.5
	(콜거래시스템)	27,619	27,212	23,517	21,062	-10.4
	(일반자금이체시스템)	70	22	14	9	-36.1
	증권자금	143,155	167,283	187,890	214,591	14.2
	(DvP시스템)	105,440	124,494	145,906	174,533	19.6
	(일반자금이체시스템)	37,715	42,788	41,984	40,058	-4.6
	외환자금	19,314	19,334	15,943	14,561	-8.7
	(CLS시스템)	2,653	2,761	2,827	2,935	3.8
	(일반자금이체시스템)	16,661	16,573	13,116	11,625	-11.4
	고객자금	37,073	42,514	45,329	50,228	10.8
	(수취인지정자금이체시스템)	13,230	14,037	14,374	14,177	-1.4
	(일반자금이체시스템)	18,445	21,442	22,459	26,173	16.5
	(연계결제시스템)	5,397	7,036	8,496	9,879	16.3
	차액자금	16,829	16,861	18,056	18,112	0.3
	기타	41,169	34,487	34,056	35,295	3.6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14,550	15,335	15,911	16,064	1.0
국고금수급 ¹⁾	5,778	6,257	7,239	7,797	7.7	
한국은행대출	1,599	1,708	1,536	1,377	-10.3	
국공채거래 ²⁾	7,172	7,370	7,137	6,890	-3.5	
원화자금 합계	299,780	323,048	340,716	369,920	8.6	
외화자금 합계(백만달러) ³⁾	520	531	707	676	-4.3	

주: 1)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여유자금 운용 및 회수, 국세수납 등)만 포함

2) 국제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거래(환매포함)

3) 예치 및 인출 포함

라. 지급수단별 결제규모

(일평균, 천건, 십억원, %)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건수	어음·수표	813	655	502	381	-24.2
	교환제시	524	421	329	252	-23.3
	발행창구제시	280	226	165	121	-26.7
	전자어음	8.5	8.7	8.5	7.7	-10.1
	계좌이체 ¹⁾	19,348	20,138	21,749	23,610	8.6
	지급카드	46,697	52,994	58,621	65,062	11.0
	신용카드	29,136	32,782	36,197	40,693	12.4
	(물품 및 용역 구매)	28,885	32,548	35,967	40,470	12.5
	(현금서비스)	251	234	229	224	-2.4
	체크카드	17,474	20,127	22,321	24,141	8.2
	선불카드	76	68	67	86	28.0
	직불카드	0.4	0.3	0.1	0.1	-27.1
	현금IC카드 ²⁾	10.9	16.1	35.9	141.3	293.3
	전자화폐	10	6	3	1	-65.3
금액	어음·수표	21,604	20,620	19,461	17,267	-11.3
	교환제시	9,075	8,220	8,002	7,661	-4.3
	발행창구제시	11,318	11,035	10,359	8,344	-19.5
	전자어음	1,211	1,366	1,099	1,262	14.8
	계좌이체 ¹⁾	52,606	53,982	58,774	61,617	4.8
	지급카드	2,273	2,395	2,536	2,670	5.3
	신용카드	1,846	1,926	2,031	2,132	5.0
	(물품 및 용역 구매)	1,677	1,760	1,862	1,967	5.7
	(현금서비스)	169	166	169	165	-2.4
	체크카드	424	466	502	532	6.2
	선불카드	2.2	2.1	2.1	2.5	18.8
	직불카드	0.0	0.0	0.0	0.0	-39.3
	현금IC카드 ²⁾	0.9	1.1	1.4	2.4	75.9
	전자화폐	0.0	0.0	0.0	0.0	-54.3

주: 1) 한은금융망 계좌이체 제외

2) 직불형카드의 일종으로 2012년 11월부터 서비스 개시

마. 주요 전자금융 이용현황

(일평균, 천명, 천건, 천매, 십억원, %)

		2016	2017	2018	2019 ⁵⁾	증감률 ⁶⁾	
인터넷 뱅킹 ¹⁾	등록고객수 ²⁾³⁾	122,538	135,047	146,559	156,829	7.0	
	(개인)	114,755	126,593	137,382	147,019	7.0	
	(법인)	7,783	8,453	9,177	9,811	6.9	
	이용건수	86,844	94,924	118,808	149,427	25.8	
	이용금액	42,052.7	43,111.7	47,550.2	47,807.8	0.5	
모바일 뱅킹 ⁴⁾	등록고객수 ²⁾³⁾	78,362	89,738	104,734	118,626	13.3	
	(스마트폰 기반)	74,675	89,738	104,734	118,626	13.3	
	이용건수	52,948	58,664	74,919	93,062	24.2	
	(스마트폰 기반)	52,931	58,664	74,919	93,062	24.2	
	이용금액	3,126.6	4,051.8	5,343.6	6,172.5	15.5	
	(스마트폰 기반)	3,126.5	4,051.8	5,343.6	6,172.5	15.5	
전자 화폐	발급매수 ³⁾	17,735	18,326	17,360	17,410	0.3	
	이용금액	0.02	0.01	0.01	0.00	-48.7	
전자 어음	발행 규모	건수	7.7	7.5	7.0	6.5	-7.2
		금액	2,104.1	2,281.5	1,955.0	1,857.4	-5.0
	할인 규모	건수	1.7	1.7	1.5	1.2	-14.3
		금액	80.7	80.6	71.9	62.3	-13.4

주: 1) 모바일뱅킹을 포함하며, 자료제출기관의 수정·보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자료 수정

2) 18개 국내은행(2개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및 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 고객 기준(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

3) 기말 기준

4) IC칩 및 VM 방식의 모바일뱅킹서비스가 각각 2016년 9월, 2015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서비스만 포함하였으
며, 자료제출기관의 수정·보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자료 수정

5) 2019년 1~3분기 중 (단,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 및 전자화폐 발급매수는 2019년 3분기말 기준)

6) 전년대비(%)

바. 간편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일평균, 천건, 십억원, %)

		2017	2018	2019 ³⁾	증감률 ⁴⁾
간편결제 ¹⁾²⁾	이용건수	2,087	3,840	5,665	47.5
	(정보·통신)	448	706	1,068	51.2
	(유통·제조)	1,639	3,134	4,597	46.7
	이용금액	65.3	120.9	165.6	37.0
	(정보·통신)	15.3	24.3	34.4	41.9
	(유통·제조)	50.0	96.6	131.2	35.8
간편송금 ¹⁾	이용건수	695	1,406	2,319	64.9
	(전자금융업자)	647	1,328	2,188	64.7
	(금융기관)	47	78	131	68.0
	이용금액	35.5	104.6	217.7	108.2
	(전자금융업자)	32.7	98.2	203.4	107.1
	(금융기관)	2.8	6.3	14.3	125.4

주: 1) 2016년부터 통계 편제를 시작하였으며, 자료제출기관의 수정·보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자료 수정

2)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간편결제에 한함(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은 불포함)

3) 2019년 1~9월 중

4) 전년대비(%)

4. 용어 해설

용어	해설
간편결제 easy payment service	지급카드의 중요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 시에는 비밀번호 입력, 지문 인증, 단말기 접촉 등으로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는 서비스(「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서비스에 해당)
간편송금 easy transfer service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충전한 선불금을 수취인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과 함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 해당)
감시 oversight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기능
거래정보저장소 trade repository	거래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인프라(FMI)
거액결제시스템 large-value payment system	통상 거액이면서 중요도가 높은 지급을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
결제리스크 settlement risk	자금 또는 증권 결제시스템에서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리스크를 지칭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포함함
결제완결성 settlement finality	자금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급, 청산, 결제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 해당 자금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금융시장인프라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금융시장에서 지급, 청산, 결제, 정보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 중앙거래당사자(또는 중앙청산소), 증권결제시스템, 거래정보저장소 등을 포괄함
담보 collateral	담보 취득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 제공자가 사용하는 자산 또는 제3자의 채무이행 보증
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네트워크의 각 노드가 분산 및 동조화(distributed and synchronised)되어 있는 원장을 검증하고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제반 기술 및 절차
소액결제시스템 retail payment system	수표, 입금 및 출금이체, 지급카드 거래 등 상대적으로 소액 지급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
순이체한도 net debit cap	차액결제거래 시 신용·유동성 리스크 규모를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참가기관이 정한 미결제순채무액(타 은행 앞 지급요청 금액 - 타 은행으로부터 고객 앞 지급요청을 받은 금액)의 상한. 종전 순채무한도를 순이체한도로 변경
시스템 리스크 systemic risk	단일 또는 다수의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다른 참가자들도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리스크
신속자금이체 fast payment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개인·기업 등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되고, 연중 24시간 이용가능한 지급결제서비스
신용리스크 credit risk	거래 당사자 중 하나가 지급기일 또는 그 이후에도 금융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게 될 리스크

용 어	해 설
실시간총액결제 real-time gross settlement	지급, 이체 지시 또는 기타 채무를 거래 건별로 실시간 결제하는 방식
업무지속성 business continuity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 또는 시스템의 한 개 이상의 요소가 실패하거나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외부사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라도 합의된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조직적, 기술적 및 인적 수단
외환동시결제 payment versus payment	한 통화의 최종이체가 다른 통화 또는 복수 통화의 최종이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결제 메커니즘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정보시스템 또는 내부 처리절차의 결함, 사람의 실수, 관리 실패 또는 외부요인에 의한 교란이 FMI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축소, 질적 저하 또는 중단을 초래할 리스크
유동성리스크 liquidity risk	거래당사자 중 하나가 비록 장애에는 금융채무를 이행할 수 있더라도 약속된 기일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될 리스크
이연차액결제 deferred net settlement	사전에 정해진 결제주기 중 이루어진 거래를 모아 차액 기준으로 결제하는 차액결제 메커니즘
자금결제시스템 funds transfer system	참가자 간 자금의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하며 지급수단, 참가기관, 운영기관,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
중앙거래당사자 central counterparty	단일 또는 복수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의 거래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모든 매도자에게는 매수자가 되고 모든 매수자에게는 매도자가 됨으로써 미결제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금융시장인프라(FMI)로 청산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앙청산소로 번역되기도 함
중앙예탁기관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증권계좌, 집중보관 서비스 및 기업행위, 상환업무 등 자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증권발행의 완전성(증권이 사고나 사기로 만들어지거나 훼손되거나 변조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시장인프라(FMI)
증권결제시스템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사전에 정해진 일련의 다자간 규정에 따라 장부상 기재방식에 의해 증권의 이체 및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
증권대금동시결제 delivery versus payment	대금 이체와 증권 인도가 함께 보장되도록 증권 인도와 대금 이체를 연계시키는 증권결제 메커니즘
참가기관 participants	금융시장인프라(FMI)가 제공하는 자금 및 기타 금융거래의 청산, 결제 및 정보저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FMI와 약정을 체결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default	해당 시스템의 규정 및 계약 등에 따라 자금 또는 증권의 이체를 완료하는 데 실패한 사건
청산 clearing	결제전 거래의 전송 및 확인 과정으로 거래의 차감 및 최종 결제포지션 확정을 포함. 때때로 결제를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됨. 선물·옵션거래의 경우 청산은 수익과 손실의 일별 정산 및 필요담보의 일별 산출을 의미하기도 함
최종 결제 final settlement	금융시장인프라(FMI) 또는 참가자가 원계약 조건에 따라 자산 또는 금융상품을 취소불가능하고 조건 없이 이전하거나 채무를 이행한 상태 또는 시점